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6. 09. 16.
- ❍ 회부일자 : 2026. 10. 08.
- ❍ 상정일자 : 2026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❍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봉안시설로의 이장을 허용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군 봉안시설로 이장하여 이용할 때, 이용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. (안 제10조제8호)
  - (기존)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 이용
  - (개정) 제한 없음(봉안담, 봉안당, 가족봉안묘, 자연장지 이용 가능)

4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군 봉안시설로 이장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, 불명확한 요건과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자격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제8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, 관외 봉안시설 유골 이장 시 이용시설을 자연장지와 가족봉안묘로 한정했던 기존 단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봉안담과 봉안당 등을 포함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❍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